



중국, 「온라인 보험 위험규제안」 발표

채원영 연구원

2016년 10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온라인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행위 적발, 업무제휴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일반기업의 온라인 보험상품 불법판매행위 적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보험 위험 규제안」을 발표하였음. 본 규제안은 중국 내 급속한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관련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임.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동 규제안 실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향후 온라인 보험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

- 2016년 10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보감회”)는 「온라인 보험 위험규제안」을 발표함.¹⁾
 - 본 규제안 실시로 2017년 초까지 보감회는 온라인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개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 2016년 11월 현재 기초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고 불법행위의 적발·개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짐.
- 보감회는 온라인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행위 적발, 업무제휴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일반기업의 온라인 보험상품 불법판매행위 적발 등에 초점을 맞춰 본 규제안을 실시할 예정임.²⁾
 - 중국 보감회는 온라인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시킬 방침임.
 - 또한 보감회는 보험회사가 업무제휴를 맺은 제3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유사 여·수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임.

1) CIRC(2016. 10. 13), “中国保监会等十四个部门联合印发《互联网保险风险专项整治工作实施方案》”, <http://www.circ.gov.cn/>.

2) CIRC(2016. 10. 13), “《互联网保险风险专项整治工作实施方案》答记者问”, <http://www.circ.gov.cn/>.

- 보험회사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할 경우 위험통제수단 확보 여부도 조사할 방침임.

- 일반기업이 보험영업 허가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기업이 유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행위 또한 적발 대상임.

■ 본 규제안은 중국의 급속한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대, 소비자 권익 침해 및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규제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임.

- 중국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2015년 7월, 「온라인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을 중국 재정부 등 10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함.³⁾
 - 이에 따라 온라인 보험업의 경우 보감회가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동 지도의견 제11조에서 온라인 보험은 안정성, 비밀유지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자상거래회사 등 비보험 자회사의 관리제도와 필요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후 보감회가 발표한 「온라인 보험 서비스 감독 잠정조치」는 온라인 보험 서비스의 경영 조건과 영업 지역⁴⁾, 온라인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시제도를 규정하였음.⁵⁾
 - 또한 온라인 보험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⁶⁾ 하였음.
- 중국 온라인 보험회사들이 ‘외도방지보험(防小三险)’, ‘추가하락보험(跌停险)’ 등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감회는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왜곡을 우려하고 있음.⁷⁾

■ 중국 보감회는 2017년 초에 작성이 완료될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온라인 보험산업 규제 개선 및 감독체계 향상, 해외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kiri](#)

3) 동 지도의견은 온라인 금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본방침, 규제감독의 명확한 책임소재,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5. 7. 20),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http://www.mof.gov.cn/>).

4) 본 규제에 따라 온라인 보험회사는 모회사의 본사 소재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음. 영업지역 제한 예외 보험종목은 개인상해보험, 정기보험, 보통형 종신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인터넷을 통한 판매·언더라이팅 및 보상절차를 수행하기 용이한 보험종목 등임.

5) Asia Insurance Review(2015. 7. 27), “China: Regulator issues Internet insurance operating rules”, <http://www.asiainsurancereview.com/>.

6) 中国韩国商会(2015. 12. 2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 통지”, <http://www.korcham-china.net/>.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4. 28), “중국 인터넷 보험의 현황과 전망”, <http://csf.kiep.go.kr/>.